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814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30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혜지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8호), 성흠제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5호),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24.4.30.)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김혜지 의원 외 20명 및 성흠제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을 각각 “시행규칙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마을버스”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u>시행규칙 제8조제4항</u>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 12.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시행규칙 제8조제7항</u> ----- ----- ----- ----- ----- ----- ----- ----- ----- ----- ----- -----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u>시행규칙 제8조제4항</u>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 ----- <u>시행규칙 제8조제7항</u> ----- ----- -----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행규칙 제8조제7항

-----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